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1 발의연월일: 2024. 4. 4.

발 의 자 : 원주영, 김지훈(국), 이수련,

전혜연, 한근수, 박윤옥,

정현미, 김지훈(민), 한송연

1. 제안 이유

○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표준안(행정안전부)에 따라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 내용을 개편하고, 소집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자율방 재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 및 위촉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안 제6조)
- 나.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소집수당 지원 규정 신설(안 제8조제4항~제6항)
- 다. 재해보상금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삭제(별지 제7호서식)
-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5.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6. 관련 법령 :
 - 가. 「자연재해대책법」
 -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제6 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지역자율방재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활동방향 검토·조정"을 "활동방향"으로,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지역자율방재 협의회"로, "구성한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 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회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필요시"를 "필요한 경우"로, "수"를 "수 있으며,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로 하고, 같

- 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전문가

- 나.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⑥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임무를 수행한 때에는 소집수 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검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출서류란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 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8항을 삭제하고 제9항을 제8항으로 한다.

-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 3. 장제보상(③,4,5,6,7,8)
-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성원 임기는 기존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접수번호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고자와의 관계		
사고경위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	1. 화재【 】 2. 구조【] 3. 구급[] 4. 3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요양보상	장해보상	
청구금액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나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	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다	장 :	(서명 또는 인)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ᅰᄎᆈᄅ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제출서류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필요시) 1부.	
담당 공무원	담당 공무원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확인 사항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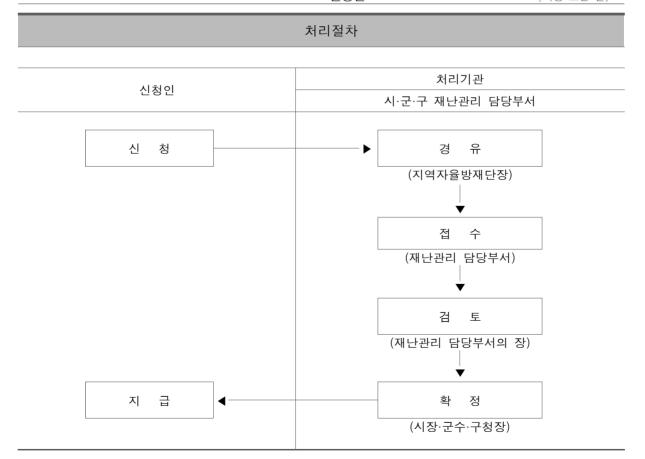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해임) ① (생 략)	제5조(해임)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자
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원을 해	<u>율방재 협의회</u>
임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	제6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
재단의 <u>활동방향 검토·조정</u> 및	<u>활동방향</u>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	
여 남양주시 <u>지역자율방재협의</u>	<u>지역자율방재 협의</u>
<u>회</u> (이하"협의회"라 한다)를 <u>구</u>	회
<u>성한다</u> .	<u> </u> 도.
②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2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0명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
	<u>도록 하여야 한다.</u>
③ 협의회의 <u>회장(이하"회장"</u>	③ <u>위원장</u>
<u>이라 한다)</u> 은 단장으로 하며, <u>회</u>	<u>위</u>
<u>원</u> 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	<u>원</u>
성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방재전문가

-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u>필요시</u>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 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⑦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 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전문가 나.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 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 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u>필요한</u> <u>경우</u> -----
- ⑥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삭 제>

제8조(소집) ① ~ ③ (생	략)	제8조(소집) ① ~ ③ (현행과 같
		음)
<u><신 설></u>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임무를 수행한 때에는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
		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한다.
<u><신 설></u>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
		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
		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
		<u>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u>
		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
		<u>다.</u>
<u><신 설></u>		⑥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
		동확인서를 검토하여 지급하여
		<u>야 한다.</u>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제6항 신설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시장 또는 단장이 단원을 소집할 경우 단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 비용 발생이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이 개정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재난 발생을 예측할 수 없기에 <u>추계 불가능</u>하며, '23년~'24년 호우·대설주의보 발령 횟수를 기준으로 비용 산정을 하더라도 1억 미만일 것으로 여겨짐
 - ☞ 소요예산 : 9,860원/시간 × 8시간/회 × 13회 × 30명 = 30,763,200원
 - •시간당 단가 : 9,860원(2024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 1회 소집당 수당 지급 시간 : 8시간(소집수당 지급 가능 최대 시간)
 - · 소집 횟수 : 13회('23~'24년 호우주의보 8회, 대설주의보 5회)
 - · 소집 인원 : 약 30명(1회 소집 시)

4. 작성자

○ 시민안전관 이명구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61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 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

- 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